

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 조(신청절차) ① “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 의 새마을지도자,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”를
① “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 5 조(신청절차) ① 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<u>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,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</u> 받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제 5 조(신청절차) ① <u>거주지 동장의 추천을</u>